

조문별 제개정이유서

1. 제명 변경

가. 개정 이유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이 개정되어 재생 에너지와 신에너지가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과 「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으로 각각 분리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도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으로 제명 변경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제명을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에서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」으로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법 체계로 개편, 에너지원의 특성별로 맞춤형 정책수립 및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2.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법률명 변경 (안 제1조)

가. 개정 이유

- 기존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이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조문에 반영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조문 내 기존의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법률명을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로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법 체계로 개편, 에너지원의 특성별로 맞춤형 정책수립 및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3. 신에너지 정의 구체화 조문 삭제 (안 제2조)

가. 개정 이유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이 개정되어 재생 에너지와 신에너지가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과 「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으로 각각 분리되어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됨에 따라 신에너지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 삭제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신에너지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‘석탄을 액화·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’를 기존 조문에서 삭제하고, 조문명을 ‘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’로 수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법 체계로 개편, 에너지원의 특성별로 맞춤형 정책수립 및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4. ‘신·재생에너지’ 용어를 ‘재생에너지’로 변경 (안 제3조, 안 제4조, 안 제7조, 안 제11조, 안 제12조, 안 제15조, 안 제16조, 안 제17조, 안 제18조, 안 제18조의3, 안 제18조의4, 안 제18조의5, 안 제18조의7, 안 제18조의8, 안 제18조의9, 안 제18조의12, 안 제18조의13, 안 제18조의14, 안 제18조의15, 안 제18조의16, 안 제18조의17, 안 제18조의18, 안 제19조, 안 제22조, 안 제23조, 안 제24조, 안 제26조의2, 안 제26조의3, 안 제26조의4, 안 제26조의5, 안 제27조, 안 제27조의2, 안 제28조의2, 안 제30조, 별표 1의 제3호, 제4호), 별표 2의 제목, 별표 4의 제목, 별표 6의 제목 및 본문 등)

가. 개정 이유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이 개정되어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가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과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으로 각각 분리되어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됨에 따라 각 조문 및 별표에서 신에너지 용어 삭제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각 조문 및 별표 내 기존 ‘신·재생에너지’ 용어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여 ‘재생에너지’로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법체계로 개편, 에너지원의 특성별로 맞춤형 정책수립 및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5. 신·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명칭 변경 (안 제4조 조문명, 제1항)

가. 개정 이유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이 개정되어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가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과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으로 각각 분리되어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‘신·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’ 명칭 변경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기존 ‘신·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’ 명칭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여, ‘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’로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정책심의회 명칭을 ‘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’로 변경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정책심의회 기능 태양광·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정책심의위원회 운영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6. 신·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(안 제7조 조문명, 제1항)

가. 개정 이유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이 개정되어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가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과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으로 각각 분리되어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'신·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' 명칭 변경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기존 '신·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' 명칭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여, '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'로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전문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태양광·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전문위원회 운영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7. 신·재생에너지센터 명칭 변경 (안 제11조 제2호)

가. 개정 이유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이 개정되어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가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과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으로 각각 분리되어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‘신·재생에너지센터’ 명칭 변경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기존 ‘신·재생에너지센터’ 명칭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여, ‘재생에너지센터’로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센터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센터의 기능을 태양광·풍력 등 순수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하여 운영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8. 신규 공급의무자의 요건 (안 제18조의3)

가. 개정 이유

- RPS 제도는 대규모 전통 에너지원의 환경친화적 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하므로 신규 공급의무자 요건 중 발전설비용량에 따른 대상 산정 시 50만칼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에서 제외하여야하는 발전설비에 재생에너지 설비뿐만 아니라 연료전지 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도 포함하여 함께 제외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공급의무자 대상 중 발전설비용량으로 정하는 요건 중 50만칼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에서 제외하는 ‘신·재생에너지 설비’를 ‘재생에너지 설비와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 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’로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RPS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규 공급의무자 대상 중 발전설비용량으로 정하는 요건을 명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9. 신규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량 산정 계산식 개정 (안 제18조의4)

가. 개정 이유

- RPS 제도는 대규모 전통 에너지원의 환경친화적 에너지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목적으로 하므로 신규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산정 시 계산식에서 제외하여야하는 발전량에 재생에너지 발전량뿐만 아니라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에서 생산된 발전량도 포함하여 함께 제외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신규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산정을 위한 계산식 중 총전력생산량에서 제외하는 '신·재생에너지 발전량'를 '재생에너지 발전량 +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서 생산된 발전량'으로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RPS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규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산식을 명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10. 신·재생에너지원 용어 변경 (안 제18조의5제3항제3호)

가. 개정 이유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이 개정되어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가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과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으로 각각 분리되어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‘신·재생에너지원’ 용어 변경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기존 ‘신·재생에너지원’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여 ‘재생에너지원’으로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법체계로 개편, 에너지원의 특성별로 맞춤형 정책수립 및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11. 국가가 거래·관리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명확화 (안 제18조의7제4항)

가. 개정 이유

- 국가(기후부장관)가 거래·관리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기존의 '발급된 공급인증서'를 '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'로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국가(기후부장관)이 거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대상 공급인증서를 명확화하여 법적 혼선 제거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12. 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대상에서 신에너지 삭제 (안 제18조의12)

가. 개정 이유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이 개정되어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가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과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으로 각각 분리되어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‘신·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’ 대상에서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부분 삭제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신·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대상에서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‘수소’와 ‘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가스’를 삭제하고 조문명을 ‘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’로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법체제로 개편, 에너지원의 특성별로 맞춤형 정책수립 및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13. 신·재생에너지설비 용어 변경 (안 제20조의2제1항제3호)

가. 개정 이유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이 개정되어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가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과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으로 각각 분리되어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‘신·재생에너지설비’ 용어 정비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기존 ‘신·재생에너지설비’에서 신에너지를 삭제하고,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‘재생에너지 설비’로 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재생에너지를 전담하는 법체제로 개편, 에너지원의 특성별로 맞춤형 정책수립 및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14.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적용사항 구체화 (안 제27조의3)

가. 개정 이유

-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27조의3(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)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격거리 적용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지방자치단체가 이격거리 적용할 수 있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「관광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
-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이격거리의 범위를 태양광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, 풍력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,500미터 이내, 도로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하도록 규정
- 지방자치단체가 풍력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해당 풍력 발전설비 높이의 2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이격거리 하한으로 정하도록 규정
- 주거지역의 기준 호수는 최소 5호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주택이나 도로의 범위, 기준 호수 산정방법 및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

라. 입법효과

- 그간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과도하게 설정되었던 이격거리 규제를 법령에서 상한 등을 구체화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15.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에서 신에너지 삭제 (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)

가. 개정 이유

-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이 개정되어 재생 에너지와 신에너지가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과 「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으로 각각 분리되어 신에너지 관련 사항은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별표1의 신·재생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를 구체화한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에서 신에너지 해당 부분 삭제 필요

나. 개정 내용

- 별표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의 에너지원의 종류 중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‘석탄을 액화·가스화한 에너지’와 ‘중질산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’를 삭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신에너지에 해당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법적 혼선을 제거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특이사항 없음